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